

##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특성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idents' Needs for Service Facilities in Multi-family Housing Properties

신화경\*                      이준민\*\*  
Shin, Hwa-Kyoung        Lee, Joon-M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facilities, and needs for service facilities using for leisure in multi-family housing properties. The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in Seoul were selected in this study. Site visits, analysis of drawing of complex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data analysis included frequencie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tudied apartment complexes provided the appropriate and adequate service facilities in accordance to the regulations of multi-family housing. Playground for children, senior center, resting place were found in all the complexes, but the presence of exercise facilities, shared spaces, green spaces, and community parks was somewhat different across the studied complexes. Satisfaction with leisure facilities were different with the apartment complexes. The respondents who had lived older apartment complexes were more likely to increase dissatisfaction, and the reason was attributed to no presence of the leisure facilities they wanted to use. The respondents said that such service facilities using for leisure facilities as playground for children, senior center, community parks, walkways, reading room, and fitness center were highly needed.

Keywords : multi-family housing properties, leisure, service facilities

주요어 : 아파트 단지, 여가, 부대복리시설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아파트는 경제성과 편리성, 그리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주택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52.7%로 2000년에 비해 27.1%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가 주택의 주요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아파트가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기는 하나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1가구 1주택 실현이라는 양적 공급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개발됨에 따라(조성희 외 2001) 주거환경이 단조롭고 획일적인 유형, 옥외 공간의 부족, 이웃과의 단절 등으로 생동감 있는 교류를 상실하게 되어 이웃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개인이 먼저 앞서는 삭막한 주거 공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정승진 외, 2003). 그러나 점차 주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

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실제 아파트 건설업체별로 아파트 단지 특성화 전략으로 휴게 공간, 공원, 운동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복리시설 및 외부 공간 계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최임주, 2006).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지원하며 생활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인 부대복리시설에는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와 관련이 있는 문화적, 사회적 시설이 포함된다(김수미 외, 2004). 현대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이웃 간의 다양한 교류를 행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서 거주자들의 공동생활의 기본이 되는 부대복리시설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로서 현대 생활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여가생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주자들의 단지 내 여가관련시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특

\*정희원(주거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정희원(교신저자), 상명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전공 박사과정, 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논문은 2006년도 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조사와 여가관련 부대복지시설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대상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파트 백과에 수록된 아파트 단지 중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 275 개를 1차로 추출하였다. 이 중 단지입주시기와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서울시 25개구의 35개 단지를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양아파트 중 60m<sup>2</sup>대, 90m<sup>2</sup>대, 120m<sup>2</sup>대로 구성된 13단지를 선정하였다.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지시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노인정),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상점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및 문고<sup>1)</sup> 등의 복지시설과 조경시설, 근린공원, 휴게시설 등의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노인정),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조경시설, 근린공원, 휴게시설들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1차적으로 아파트 백과에 수록된 13개 단지의 조감도를 기준으로 하고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례단지의 현장조사와 관리소장과 면담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지시설의 유무와 추가·변경사항여부를 조사하였다.

실증조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조사 대상인 13개 아파트 단지별 각각 20명의 거주자를 임의 표집 하여 2004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도구<sup>2)</sup>의 내용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노인정),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 근린공원, 휴게시설 등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요인,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sup>3)</sup> 등이 포함된다.

회수된 설문지 중 총 24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 9.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분석을 하였다.

## II. 부대복지시설

### 1. 부대복지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부대복지시설은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또는 설비 개념

- 1) 문고는 도서관/독서실과 함께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어 조사함.
- 2) 설문도구의 Cronbach Alpha는 .83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냄.
- 3)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지시설 가능한 시설로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된 것과 부대복지시설관련 선행연구<표 3> 및 여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신화경, 2005)에서 제시된 총 36개의 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노인정), 공원, 휴게소, 정원(옥외정원), 산책로, 다목적광장, 운동장, 집회소(주민회의실), 도서관/독서실, 씨름터장,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헬스방, 에어로빅장, 볼링장, 태권도/유도/검도장, 스쿼시장, 만화방, PC방, 비디오/DVD방, 보드게임방, 점필방/사우나, 기원, 노래방, 체조/스트레칭장, 요가/기호흡/명상장)에 대해 조사함.

의 부대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거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인 복지시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거주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풍부히 하기 위한 부속시설이다(신연섭, 2006). 또한 커뮤니티를 고려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대복지시설은 주택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공동주택단지의 하나의 구성요소이며, 아파트 단지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와 커뮤니티를 촉진한다. 동시에 시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지 공간에 개성을 부여하는 부속시설을 의미한다(연태경 외, 2005).

거주자들의 공동생활의 기본이 되는 부대복지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여가사회에 대응되는 거주자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 2.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지시설

아파트단지 내 부대복지시설 중 여가관련시설을 따로 규정하는 것은 없으나, 거주자의 생활의 편리성과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 제공 및 거주자들 간의 상호접촉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인 근린시설관점에서는 여가와 관련된 시설이 내포되어있으므로, 근린시설 설치 기준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여가관련 부대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볼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시설의 유형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근린시설기준을 다루는 법령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당초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73년 7월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졌으나 '7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면개정 이후 '79년 4월 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되었다. 한편 이들 근린시설 관련규정은 다시 '91년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는 별도로 분리 제정되면서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배순석 외, 1996).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시설기준을 다루는 이들 법령의 변경과 함께 근린시설의 종류와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끊임없이 변경되어 왔다. 이것은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설기준이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인 '73년에는 복지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근린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상가(시장), 주민공동시설(집회소), 의료시설, 공중목욕탕 등이었다. 여기에 '78년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정, 근린공공시설, 유치원이 단지 내 복지시설로서 그 기준이 새로 규정되었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육시설이 '93년 9월에, 그리고 문고가 94년 12월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시설로서 새로이 추가되었다. 반면에 공중목욕

탕과 같은 일부 시설은 공동주택 내에 목욕탕설비가 일반화되자 '94년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아예 삭제되었으며, 근린상가는 과거 단지규모별로 별도의 시설종류와 기준으로서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시설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시설 용어에 있어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운동장 및 체육시설은 현재 주민운동시설로, 근린상가(시장)는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집회소는 현재 주민공동시설로, 노인정은 현재 경로당으로 변경되었다.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 관련법규 연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단지의 세대규모별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하여 유치원,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의 복리시설과 휴게시설, 조경시설, 근린공원 등의 부대시설로 나눌 수 있다<표 2>.

표 1.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 관련법규 연혁

관련법규 시설유형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 규칙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3.7	'78.10	'79.4	'81.3	'82.5	'91.1	'93.9	'94.12	'96.2	'98.8	'99.9	'04.4								
어린이놀이터('73.7) 어린이놀이터시설('81.3) 어린이놀이터('91.1)	○	○	○	○	○	○	○	○	○	○	○	○								
운동장 및 체육시설('73.7)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78.10) 체육시설('81.3) 주민운동시설('91.1)	○	○	○	○	○	○	○	○	○	○	○	○								
시장('73.7) 근린상가('78.10) 판매시설('81.3) 구매시설('91.1) 생활시설('91.1) 구매시설('93.9) 생활편의시설('96.2) 근린생활시설('99.9)	○	○	○	○	○	○	○	○	○	○	○	○								
집회소('73.7) 주민공동시설('93.9)	○	○	○			○	○	○	○	○	○	○								
의료시설	○	○	○	○	○	○	○	○	○											
공중목욕장('73.7) 공동목욕탕('78.10) 공중목욕탕('81.3) 일반목욕탕('91.1)	○	○	○	○	○	○														
노인정('73.7) 경로당('03.4)		○	○	○	○	○	○	○	○	○	○	○								
공공시설('78.10) 근린공공시설용대지('91.1)		○	○	○	○	○	○	○	○	○	○	○								
유치원('73.7) 유치원, 탁아소('82.5) 유치원('91.1)		○	○	○	○	○	○	○	○	○	○	○								
보육시설													○	○	○	○	○	○	○	○
문고													○	○	○	○	○	○	○	○

주: '○'는 시설별 관련규정이 존재했던 시기를 의미함.

공동주택 단지규모별 여가관련시설의 설치의무기준을 보면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2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 설치의무화 되어 있으며, 경로당은 10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은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 설치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운동시설은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하고 시설의 종류에 차이를 보인다. 즉 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은 500세대 이상,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의 운동장은 1,000세대 이상, 축구, 정구, 야구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은 3,0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설치 의무화 되어 있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시설 중에서는 휴게시설이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 설치의무화 되어 있으며, 정원 등 조경시설이 단지면적의 30%를 녹지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

표 2. 단지규모별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의무 기준 (단위: 세대)

시설유형	단지규모										
	20	50	100	300	500	1,000	2,000	3,000	5,000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상가 포함)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	운동장(정구, 농구, 배드민턴 포함)										
	정구장 2면,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소년축구장, 정구장, 소년야구장										
사회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입주자회의실/집회소,도서관/독서실)											
문고											
부대시설	조경시설(정원)	단지면적의 30%를 녹지면적으로 확보									
	근린공원	설치의무는 없으나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권별도 설치									
	휴게시설										

자료: 밀레니엄 커뮤니티센터, p 292~293, 법제처 <http://www.moleg.go.k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정리

표 3. 여가관련 부대복지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시설분류		비고	연구자	시설분류		비고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박철수 '96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지하 공간 아파트를 대상으로한 선행논문 중심	최상호의 '02	놀이공간	놀이터 등	옥외공유공간 아파트 거주자 중심	
	복지시설	주민공동시설			에어로빅시설, 탁구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부녀교실, 부녀회실, 문화공간	휴게공간		휴게소 등
		생활편의시설			서예학원, 미술실, 지하상가	운동시설		농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
이연숙의 '97	공유화를 위한 시설	공동놀이방, 공동집회 및 행사실, 공동독서실 및 독서실, 공동보관소	주민공유공간 아파트 소집단위크삼(주부)중심	백혜선의 '02	단지내 광장	광장 등	옥외생활공간 공동주택 단지 거주자중심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문화센터, 수영장, 볼링장, 에어로빅실,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단지내 공원	테마공원(자연학습장, 건강지압로)등		
이원영의 '99	스포츠시설	탁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도장	여가문화시설-거주자(주부)중심	정승진의 '03	단지내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운동공간, 녹지공간, 산책로, 보행전용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탁아교육시설, 공동식당, 휴게시설, 운동건강시설, 편의시설, 공동작업시설기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공동주택을 대상으로한 선행논문 중심	
	취미교양시설	도서관, 컴퓨터이용실, 각종학원, 집회/행사장,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기원			관리사무소,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문고	탁아교육시설, 공동식당, 휴게시설, 운동건강시설, 편의시설, 공동작업시설기타		
	감상관람시설	문화회관, 소극장, 야외공연장, 미술관/전시장, 박물관, 과학관, 동/식물원, 영화관			옥내	어린이놀이방 및 탁아시설, 노인정, 부녀회 사무실, 취미실, 교양강좌실, 주민회의 및 다목적행사장(입주자 집회실): 소형, 도서실/독서실, 다용도 공용실(지하의 선큰가든)		커뮤니티공간-아파트 거주자(주부)중심
	사교위락시설	놀이방,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공원, 유원지, 각종회관			옥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산책 및 녹지공간,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운동장 및 농구장		
김미희의 '00	산책로 및 조깅코스, 노인복지회관, 단지 내 인공폭포 연못분수대 등과 같은 녹지시설, 화단/채원, 수영장, 목욕탕/사우나, 자전거 보관소, 다목적 행사실, 실내정원, 공동휴게실, 실내놀이터, 에어로빅실, 공동놀이방, 공동공부방, 볼링장, 각 세대별 보관창고, 대형수납창고, 소규모 작업장, 패스정보기기실, 공동세탁실	외부공동공간-아파트 거주자(주부)중심	서수정의 '04	부대시설	주차공간, 로비, 녹지공간	부대복지공간-아파트를 대상으로한 선행논문 중심		
김한수의 '00	운동공간, 어린이놀이터, 휴식공간, 헬스장, 휴게실, 자전거보관소, 노인휴게소, 독서실, 탁아소, 공동차고, 수영장, 공동세탁소	외부공간-아파트 거주자 중심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보육시설, 노인정,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독서실, 게스트룸, 다목적홀			
조성희의 '00	어린이/노인분야, 가시수납분야, 여가/운동분야(휴게시설, 운동시설, 공원, 녹지/조경, 화훼/채원, 실내정원, 수경시설, 수목터널, 산책/조경로, 자전거도로), 복지분야, 공동체활동분야, 주거지원서비스분야	공동생활공간-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한 선행논문 중심	신화경의 '05	편의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아파트 단지중심		
				실외시설	수영장, 스파, 수변공간/공원, 산책로, 조깅트레이, 파티오, 외부라운지, 야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체육활동공간, 어린이놀이터, 골프연습장, 피크닉장소, 바비큐가든, 별도의부수납공간			
김정례의 '01	진입공간, 도로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공간, 주차공간, 녹지공간, 그 외공간	외부공간-아파트 거주자중심	신연섭의 '06	회의실	클럽하우스, 레크리에이션룸, 회의장, 영화관람공간, 갤러리, 당구/포켓볼장, 도서실, 컴퓨터(라운지), 라켓볼장, 농구장, 체력관련실, 비즈니스센터, 공용놀이방, 공용인터넷사용공간, 개별 인터넷사용공간	부대복지공간-아파트를 대상으로한 선행논문 중심		
손세관의 '01	공부나 독서를 할 수 있는 조용한 방이나 장소, 노인들이 말할 수 있는 조용한 곳,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홀이나 로비 등의 장소, 일광욕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 유치원, 초등학교생들이 노는 장소, 취미를 위하여 모일 수 있는 장소, 청소용구기구도구 등을 들 수 있는 장소, 자전거유모차를 들 수 있는 장소, 자동차나 큰 물건을 청소할 수 있는 장소, 이불 등을 세탁하거나 말릴 수 있는 장소, 수선이나 목공의 작업이 가능한 장소, 출내기 맨손체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유아를 돌보지 않고도 안심하게 놀게 할 수 있는 장소, 수주일 또는 계절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두는 장소	생활시설과 공간-아파트 거주자중심		관리공간	회의실, 공용사무실, 우체국/동사무소 등 공공기관파견			
				교육공간	어린이집, 유치원, 독서실/문고, 영어학습실, 다목적 교육공간			
				커뮤니티 공간	정보문화실, 시청각실, 게스트룸, 연회장/파티장,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공동작업장, 옥외광장, 수경시설, 휴게소			
				웰빙공간	산책로, 명상공간, 건강자가검진공간, 사우나/스파, 아트센터, 단지내 텃밭			
			운동공간	실내운동공간, 실외운동공간				
				기타공간	경조사공간, 개인스튜디오, 생활상담실, 공용창고, 무인택배시설, 코인세탁실, 자전거보관소, 상가, 건물외관조명, 야간경관조명			

다. 또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설치의무는 없으나 주민의 사고,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권의 별도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연구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선행 연구내용은 <표 3>과 같다.

박철수(1996)는 지하공간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복리시설을 에어로빅시설, 탁구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부녀교실, 문화공간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서예학원, 미술실, 지하상가를 생활편익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연숙 외(1997)는 주민공유공간을 공유화를 위한 시설과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문화센터, 수영장, 볼링장, 에어로빅실,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이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이원영 외(1999)는 여가시설을 스포츠 시설, 취미·교양 시설, 감상·관람시설, 사교·위락시설로 분류하였다. 김미희 외(2000)는 외부공동공간을 산책로 및 조깅코스, 노인복지회관, 단지 안에 인공폭포·연못·분수대 등과 같은 녹지시설, 화단/채원, 수영장, 목욕탕/사우나, 자전거보관소, 다목적 행사실, 실내정원, 공동휴게실, 실내놀이터, 에어로빅실, 공동놀이방, 공동공부방, 볼링장, 각 세대별 보관창고, 대형수납창고, 소규모 작업장, 패스/정보기기실, 공동세탁실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김한수(2000)는 외부공간을 운동공간, 어린이놀이터, 휴식공간, 헬스장, 휴게실, 자전거보관소, 노인휴게소, 독서실, 탁아소, 공동차고, 수영장, 공동세탁소 등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조성희 외(2000)는 공동생활공간을 어린이/노인분야, 가사수납분야, 여가/운동분야, 복지분야, 공동체 활동분야, 주거지원서비스분야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휴게시설, 운동시설, 공원, 녹지/조경, 화훼/채원, 실내정원, 수경시설, 수목터널, 산책/조깅로, 자전거도로 등이 여가/운동분야에 포함하고 있다.

김정례 외(2001)는 외부공간을 진입공간, 도로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공간, 주차공간, 녹지공간, 그 외공간 등 8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손세관(2001)은 생활시설과 공간을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 학생들이 노는 장소, 자전차·유모차 등을 둘 수 있는 장소, 자동차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장소,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상호 외(2002)는 옥외공유공간을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시설, 단지내 광장, 단지내 공원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경주(2002)는 공유시설 및 서비스 공간을 탁아·교육시설, 공동식당, 휴게시설, 운동건강시설, 편의시설, 공동작업시설, 기타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주서령(2002)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관리사무소,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문고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백혜선(2002)은 옥외생활공간을 단지 내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운동공간, 녹지공간, 산책로, 보행전용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승진 외(2003)는 커뮤니티 공간을 옥내와 옥외로 나누어 어린이 놀이방, 탁아시설, 노인정, 교양강좌실 등은 옥내에, 어린이 놀이터, 산책 및 녹지공간, 테니스장 및 운동장 등은 옥외에 설치하여 분류하고 있다.

윤희진(2004)은 부대복리공간을 부대시설과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로 부대복리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며 서수정 외(2004)는 부대복리시설을 복지 및 후생시설, 체육놀이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화경 외(2005)는 여가시설을 실외시설과 실내시설로 분류하였다. 신연섭(2006)은 부대복리공간을 관리공간, 교육공간, 커뮤니티공간, 웰빙공간, 커뮤니티공간, 운동공간, 기타공간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분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시설을 참고하여,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외한 복리시설 중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중 휴게시설, 조경시설, 근린공원의 7개로 분류하였으며, 문고는 주민공동시설의 도서관/독서실에 편입시켜 조사하였다. 특히 여가관련 복리시설 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주민운동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조사하였다.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보면 기존 연구와 Web의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의 종류를 파악하는 연구와 주부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도구를 이용한 의식 및 요구에 관한 분석 연구들이 있었으며, 아파트단지 사례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있었으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의 현황분석과 이들 사례단지 거주자들의 요구를 병행 조사하는 연구는 미비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각 단지 거주자들의 요구를 병행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III.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의 특성

### 1. 조사대상 사례 아파트 단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사례 아파트 단지의 규모는 <표 4>와 같이 29세대~98세대였으며 동수 구성은 3동에서 14동까지 다양하였다. 입주연도는 1978년부터 2001년까지였으며 층수의 구성도 다양하였다.

### 2.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종류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포함)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노인정), 휴게시설은 모든 단지에서 나타났다. 그 외의 주민운동시설은 13개 사례 단지 가운데 11개 사례 단지에서 나타났으며,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 근

표 4.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일반적 특성

사례단지 아파트	입주시기	세대수	동 수	층수	계단식/복도식
광장동W아파트	1978	576	14	12	계단식
잠실동W아파트	1983	555	7	15	계단식, 복도식
상계동D아파트	1988	538	4	15	계단식
신당동H아파트	1990	942	10	12~15	계단식, 복도식
풍납동H아파트	1991	708	6	15~21	계단식
도화동S아파트	1994	982	14	16~17	계단식
영천동S아파트	1995	898	8	14	계단식
방배동H아파트	1999	644	8	11~20	계단식, 복도식
창신동D아파트	1999	529	3	12~23	계단식, 복도식
이촌동D아파트	2000	834	10	22	계단식
도곡동S아파트	2000	732	10	22~24	계단식
수유동S아파트	2000	690	7	10~18	계단식, 복도식
금호동S아파트	2001	582	11	13~15	계단식

린공원은 7~8개 사례 단지에서 나타났다<표 5>.

경로당(노인정)은 독립된 건물로 설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관리실 및 주민공동시설과 통합된 건물로 있거나, 또는 보육시설 및 입주자회의실, 부녀회실과 함께 한 건물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옥외주민운동시설은 운동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축구장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갖추어진 단지가 있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놀이터 및 휴게

시설과 함께 협소한 면적으로 있거나 시설의 낙후로 잘 갖추어지지 못한 단지의 경우도 있었다. 옥외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진 단지에는 운동기구, 건강지압로, 소형씨름터(모래장)등의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회의실, 부녀회실, 도서관/독서실 등의 시설들이 있었고 주로 독립되어 설치되기보다는 관리실과 함께 통합된 건물로 있었다.

조경시설은 연못이나 분수 같은 수공간과 미적인 조형물, 여러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텃밭 및 정원이 있었고 근린공원은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의 광장, 공원 및 산책로 등이 있었다.

한편, 5개의 사례단지에서는 시설을 변경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지하 공간 및 문서창고 등을 거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옥내주민운동시설(헬스장, 에어로빅장 등)로 변경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관리실 및 노인정의 공간을 줄여서 부분적으로 옥내주민운동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는 부대복리공간이 변형되는 형태로 기존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기존공간의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신연섭(2006)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개발방식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준한 것이고 실제 거주자들의 요구보다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5. 조사대상 아파트 사례단지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존재유무

아파트명	복리시설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입주자회의실, 독서실/도서관 등)	조경시설	근린공원 (유원지, 광장 등)	휴게시설
광장동W아파트	○	○	농구장(소규모옥외농구골대) ○	×	녹지 ○	×	파고라 및 벤치 ○
잠실동W아파트	○	○	농구장(소규모옥외농구골대)○	×	텃밭 ○	×	파고라 및 벤치 ○
상계동D아파트	○	○	운동장 및 운동기구 ○	회의실 ○	텃밭 ○	근린공원○	파고라○
신당동H아파트	○	○	×	×	정원 ○	×	파고라(쉼터) ○
풍납동H아파트	○	○	운동장 및 농구장○	×	×	×	파고라 및 벤치 ○
도화동S아파트	○	○	농구장○	입주자회의실 ○	×	광장 ○	벤치 ○
영천동S아파트	○	○	×	×	조경시설 ○	광장 ○	파고라 및 벤치 ○
방배동H아파트	○	○	농구장 ○	입주자회의실 ○	조경시설 ○	광장 ○	파고라 및 벤치 ○
창신동D아파트	○	○	테니스장, 건강지압로○	부녀회 사무실, 문고 ○	×	×	파고라○
이촌동D아파트	○	○	배드민턴장, 건강지압로, 체력단련시설○	부녀회사무실 ○	조경시설 ○	공원, 광장 ○	파고라 및 벤치 ○
도곡동S아파트	○	○	농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시설○	×	텃밭, 조경시설 ○	공원, 광장 ○	파고라 ○
수유동S아파트	○	○	배드민턴장, 건강지압로○	입주자회의실 ○	×	광장 ○	파고라 및 벤치 ○
금호동S아파트	○	○	배드민턴장, 건강지압로, 체력단련시설○	입주자 회의실 ○	×	×	파고라 및 벤치 ○

(×: 설치되지 않음, ○: 설치 됨, ■: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신설한 공간임)

### IV.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요구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성별은 여성이 81.6%로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4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3.5%, 50대가 19.3% 순이었다. 가족 수가 4인 가정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성은 ‘부부+자녀’의 구성이 77.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 61.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평균 39.33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79.9%로 많았으며 현재 아파트 거주기간은 평균 3.86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주면적은 평균 120.85 m<sup>2</sup> 나타났다.

#### 2.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전반적인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우 만족한다’(5점)~‘매우 불만족한다’(1점)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보통이다’가 54.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만족한다’가 21.0%, ‘불만족한다’가 17.7%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만족도 평균은 2.95로 나타났다. ‘보통’을 중성으로 보고 만족과 불만족 비율을 보면 만족이 22.1%, 불만족이 23.0%로 불만족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찬옥 연구(1997)에서는 기존의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양, 질적 수준, 위치, 관리 수준, 운영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 평균 2.4점으로 각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례 아파트단지별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표 6>, 입주시기가 가장 오래된 광장동W아파트가 평균 2.20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입주시기가 가장 최근인 금호동S아파트(2001)가 평균 3.45로 다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도곡동S아파트(2000)가 평균 3.30, 수유동S아파트(2000)가 평균 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만족도

아파트(입주 시기)	만족도		아파트(입주 시기)	만족도	
	평균	S.D		평균	S.D
광장동W아파트(1978)	2.20	1.01	방배동H아파트(1999)	2.80	0.77
잠실동W아파트(1983)	3.06	0.54	창신동D아파트(1999)	3.00	0.82
상계동D아파트(1988)	3.15	0.59	이촌동D아파트(2000)	3.00	0.79
신당동H아파트(1990)	2.65	0.75	도곡동S아파트(2000)	3.30	0.67
풍납동H아파트(1991)	3.15	0.37	수유동S아파트(2000)	3.25	0.72
도화동S아파트(1994)	3.11	0.74	금호동S아파트(2001)	3.45	0.69
영천동S아파트(1995)	2.45	0.10			

표 7.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불만족 이유

불만 요인	평균	S.D
시설이 낙후되어서	3.03	1.14
시설의 면적이 부족해서	3.45	1.16
시설의 수가 부족해서	3.67	1.11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	4.02	1.02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3.87	1.14
거리가 멀거나 가기가 힘들어서	2.24	1.03
시설의 이용비용이 비싸서	2.26	1.11

#### 3. 아파트단지별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불만족 이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여가시설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조사한 결과,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 불만족한다가 평균 4.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평균 3.87, ‘시설의 수가 부족해서’가 3.67, ‘시설의 면적이 부족해서’가 평균 3.45순으로 나타났다<표 7>.

사례 아파트단지별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불만족 이유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광장동W아파트의 불만족 이유는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순이었으며,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천동 S아파트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 ‘시설의 수가 부족해서’의 순으로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례아파트 단지 별 부대복리시설 불만족 이유(평균값)

구분	광장동 W 아파트	잠실동 W 아파트	상계동 D 아파트	신당동 H 아파트	풍납동 H 아파트	도화동 S 아파트	영천동 S 아파트	방배동 H 아파트	창신동 D 아파트	이촌동 D 아파트	도곡동 S 아파트	수유동 S 아파트	금호동 S 아파트
시설이 낙후되어서	3.19	4.00	3.63	2.80	2.75	3.16	3.37	3.13	3.33	2.53	3.17	3.33	1.57
시설의 면적이 부족해서	2.80	4.50	3.75	3.62	2.33	3.26	3.40	3.00	4.24	3.78	4.00	3.62	2.67
시설의 수가 부족해서	3.13	5.00	3.56	4.08	3.75	3.26	3.65	3.92	4.06	3.82	4.57	3.83	3.07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	5.00	4.75	3.69	4.38	4.60	3.26	4.05	4.19	4.13	4.39	4.00	3.67	3.25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5.00	5.00	3.69	4.15	4.40	3.16	3.78	4.27	3.76	4.11	4.57	3.50	2.94
거리가 멀거나 가기가 힘들어서	1.67	2.10	2.63	2.38	2.25	2.16	2.72	2.17	1.75	2.53	2.63	2.42	1.73
시설의 이용비용이 비싸서	1.73	3.91	2.75	2.00	1.00	2.26	3.21	1.67	1.94	2.43	2.25	2.67	1.60

4. 아파트단지 내 요구되는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거주자들이 원하는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노인정),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 근린공원, 휴게시설을 포함한 36개 여가관련 시설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5점)~‘전혀 필요없다’(1점)의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다.

아파트 단지 내 여가시설 중 ‘어린이놀이터’(4.46점), ‘산책로’(4.68점), ‘공원’(4.56점), ‘경로당(노인정)’(4.43점), ‘도서관/독서실’(4.18점), ‘헬스장’(4.06점)은 평균 4점 이상의 요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옥외정원)’(3.90점), ‘(요가/기호흡/명상)장’(3.85점), ‘휴게소’(3.83점), ‘찜질방/사우나’(3.81점), ‘수영장’(3.77점), ‘에어로빅장’(3.58점), ‘다목적광장’(3.57점), ‘배드민턴장’(3.57점), ‘운동장’(3.49점), ‘집회소(주민회의실)’(3.42점), ‘테니스장’(3.35점), ‘체조/스트레칭’장’(3.30점), ‘농구장’(3.22점) 등은 평균 3점 이상의 요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도 (N=245)

여가시설 종류	평균(S.D)	여가시설 종류	평균(S.D)
어린이놀이터	4.64(0.67)	골프연습장	2.98(1.43)
경로당(노인정)	4.43(0.83)	당구장	2.07(1.19)
공원	4.56(0.77)	탁구장	2.91(1.43)
휴게소	3.83(1.08)	수영장	3.77(1.29)
정원(옥외정원)	3.90(1.24)	헬스장	4.06(1.21)
산책로	4.68(0.52)	에어로빅장	3.58(1.26)
다목적광장	3.57(1.13)	볼링장	2.78(1.32)
운동장	3.49(1.24)	태권도/유도/검도장	2.69(1.36)
집회소(주민회의실)	3.42(1.12)	스쿼시장	2.75(1.38)
도서관/독서실/문고	4.18(1.17)	만화방	2.25(1.20)
씨름터장	1.87(1.01)	정보문화실	2.34(1.29)
농구장	3.22(1.45)	시청각실	2.21(1.29)
축구장	2.57(1.31)	보드게임방	2.06(1.11)
야구장	1.97(1.02)	찜질방/사우나	3.81(1.24)
배구장	2.09(1.06)	기원	2.27(1.28)
테니스장	3.35(1.42)	노래방	2.54(1.29)
배드민턴장	3.57(1.31)	체조/스트레칭장	3.30(1.43)
게이트볼장	2.52(1.26)	요가/기호흡/명상장	3.85(1.18)

이소영 연구(1995)에서는 공유 공간 중 아파트 단지에서 선호하는 시설로 여가와 관련된 실내놀이터, 볼링장, 수영장, 도서관, 목욕탕/사우나 등의 공간의 요구가 높다고 하였으며, 김진희 연구(2001)에서는 공유 공간 중 여가와 관련된 시설인 산책로 및 조깅코스과 공원 등의 공간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례 아파트 단지 별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로 요구하는 요구도가 4점 이상인 시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아파트 단지 내 원하는 여가관련 부대

복리시설이 없어서 만족도가 낮았던 단지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원하는 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외주민운동시설로는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이 4점 이상의 요구도를 보였으며, 옥내주민운동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태권도/유도/검도장’, ‘만화방’, ‘PC방’, ‘비디오/DVD방’, ‘스쿼시장’, ‘보드게임방’, ‘찜질방/사우나’, ‘노래방’, ‘(체조/스트레칭)장’, ‘(요가/기호흡/명상)장’ 등의 4점 이상의 요구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로 스포츠시설을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를 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조사결과,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노인정), 휴게시설은 동일하게 갖추고 있었으나 일부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공원, 조경 시설에서는 단지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지하 보일러실이었던 기존시설을 주택법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헬스장, 에어로빅장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관리실 공간 및 기타 공간 등 기존 공간을 분리하고 재 정비하여 주민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기준 보완의 필요성과 아파트단지 거주자 특성에 따라 여가관련시설을 설치 변경 사용할 수 있는 법의 융통성 및 부대복리시설의 변용을 고려한 공간계획의 가변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요인을 파악해 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의 불만족 상태였으며 입주시기가 오래된 아파트단지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만족도가 낮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요 불만요인으로는 원하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단지 내 여가활동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의 개발 및 확보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로 그 요구도가 공원 및 산책로, 정원, 휴게소 등의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관/독서실 및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헬스장, 요가/명상장 및 수영장 등의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단지규모별로 주택법에서 제시하는 시설 이외의 것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내운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부대복리공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아파트 단지 내 여가시설 계획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표 10. 사례 아파트 단지별 요구되는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아파트명	복리시설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	근린공원	휴게시설
광장동W아파트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스쿼시장, (체조/스트레칭)장	도서관/독서실, 보드게임방, 점질방/사우나, 노래방	정원	공원 산책로	휴게소
잠실동W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농구장, 당구장, 수영장, 헬스장, 태권도/검도/유도장, (체조/스트레칭)장	정보문화실, 시청각실, 보드게임방, 점질방/사우나	정원	산책로, 다목적광장	
상계동D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산책로	
신당동H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요가/기호휴/명상)장	집회소, 도서관/독서실	정원	공원, 산책로, 다목적광장	휴게소
풍납동H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체조/스트레칭)장, (요가/기호휴/명상)장	도서관/독서실, 정보문화실, 시청각실, 점질방/사우나, 노래방		공원, 산책로, 다목적광장	
도화동S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배드민턴장, 수영장, 헬스장, (요가/기호휴/명상)장	도서관/독서실, 점질방/사우나	정원	공원, 산책로	
영천동S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수영장, 헬스장, 태권도/유도/검도장,점질방/사우나, (체조/스트레칭)장, (요가/기호휴/명상)장	도서관/독서실	정원	공원, 산책로	휴게소
방배동H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장, 스쿼시장, (체조/스트레칭)장, (요가/기호휴/명상)장	집회소, 점질방/사우나, 노래방		공원, 다목적광장	휴게소
창신동D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장, 수영장, 헬스장	집회소	정원	공원, 산책로	휴게소
이촌동D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요가/기호휴/명상)장	도서관/독서실	정원	공원, 산책로, 다목적광장	
도곡동S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태권도/유도/검도장, 스쿼시장, (체조/스트레칭)장, (요가/기호휴/명상)장	도서관/독서실, 점질방/사우나	정원	공원, 산책로, 다목적광장	
수유동S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관/독서실		공원, 산책로	
금호동S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농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집회소, 도서관/독서실	정원	공원, 산책로, 다목적광장	휴게소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사례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으나, 선정된 사례 단지가 아파트단지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단지별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의 특성과 단지별 거주자의 평가 및 요구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설문조사 사례를 단지별 20부로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단지별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닌다. 그러나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사례수를 늘려 조사 분석하는 연구와 단지규모별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 종류를 파악하는 기초 연구단계이나, 이들 시설이 아파트단지 내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로서 계획 배

치될 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간의 연계성 및 단지의 토지 효율화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가관련 부대복리시설의 복합화 계획 연구가 후속연구로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김미희 · 손승광 · 문희정(2002),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동 공간에 대한 요구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1), 115-124.
2. 김수미 · 심우갑(2004), 호수밀도를 고려한 옥외부대복리시설 기준과 옥외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8), 108-116.
3. 김정례 · 박희진(2001), 이용행태를 통한 아파트 외부공간 계획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3), 1-12.
4. 김한수(2000), 아파트 외부공간 실태와 조성기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3), 87-98.
5. 김현주 · 이창형 · 박소라(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 장인들의 주말 여가 문화 이용 행태변화, 제 1회 여가 · 문화 포럼, 여가문화학회.

6. 김진희(2001),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관계 및 공유 공간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철수(1996), 아파트단지 내 지하공간 활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91, 63-97.
8. 배순석·박종택(1996),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9. 백혜선(2002),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일상생활공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손세관(2001), 우리나라 공영 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의 특성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4), 1-8.
11. 신연섭·연태경(2006), 가족생활주기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거주자 요구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6), 57-64.
12. 신연섭(2006), 아파트 부대복리공간에 대한 사용자 의식 및 이용실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신화경(2004), 공동주택단지 내 여가시설 특성 및 거주자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89-97.
14. 신화경(2005), 지역사회 여가시설 개발을 위한 주5일 근무자들의 여가행태 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81-190.
15. 서수정·백혜선(2004),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 219-230.
16. 윤희진(2004), 초고층복합건물 부대복리시설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아파트 백과(2002), 강남/강북편, 세진기획.
18. 연태경·신연섭(2005), 관리자 면담을 통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관리 및 사용실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10), 121-130.
19. 이소영(1995), 거주자 요구를 기초로 한 공유 공간 계획: 근로자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이연숙·신화경(1997), 거주자특성별 주민 공유 공간 요구에 대한 연구: 소집단 워크샵 패널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8(1), 1-12.
21. 이원영·강순주(1999) 성남지역 거주자들의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103-123.
22. 정승진·이원영·강순주(2003), 아파트 거주자의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이용 및 요구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1), 41-50.
23. 조성희·강혜경(2000),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생활공간구성을 위한 거주자 사용행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3(3), 103-113.
24. 주서령(2002),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의 공간프로그램 개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3(3), 33-43.
25. 최상호·석호태(2002), 아파트 옥외공유공간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3(3), 93-101.
26. 최임주(2006), 평형별 구성비에 따른 아파트단지 부대복리시설 공급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4), 159-168.
27. www.moleg.go.kr, 법제처.

(接受: 2007. 10. 4)